

[서식 예]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대표자 이사장 □□□
소송수행자 ◇◇◇

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구취지

피고가 19○○. ○. ○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
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본건 사건 진행 과정

-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◎◎◎의 근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19○○. ○. ○○구청의 고용직공무원인 지방방범원으로 임용되어 19 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○○경찰서에서 파견 근무하였습니다.
 - ② 19○○. ○○. ○○.자로 ○○경찰서 파견이 해제되었고, 그 이후 ○○구청에서 근무하다가 19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19○○. ○. ○○.까지는 ○○구청 산하 ○○동사무소 내 구민독서실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.



- ③ 19〇〇. 〇. 〇〇. 〇〇:〇〇 구민독서실 관리실에서 천식발작을 일으켜 신음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, 같은 날 〇〇:〇〇경 직접사인 호흡정지, 선행사인 천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.
- 나. 이에, 원고는 1900. 0. 00.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.
- 다. 그러나 피고는 19〇〇. 〇. 〇〇.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.

2. 처분의 위법성

- 가. 망인은 ○○경찰서 산하 파출소 방범위원회 소속 방범원으로서 시위진압용
 최루탄 가스를 흡입하면서 시위진압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용이전인 19
 ○○. ○○경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습니다.
- 나. 망인은 임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○○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파견되어 시 위진압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를 흡입하 였습니다.
- 다.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는 기관치천식을 유발·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입니다.
- 라.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에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악화되어 중등증 이상 의 지속적인 기관지천식 상태로 계속되던 중 19○○. ○. ○○. 기관지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,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관악구청 소속 지방방범원으로서의 공무수행 중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함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기관지천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악화된 상태가지속되던 상태에서 천식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, 비록 망인이 ○○경찰서 파견근무가 종료된 이후 사망하였다 하여도 망인이 기존에 이미 악화된 기관지천식상태에서 비롯한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

그렇다면,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재직증명서1.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1. 갑 제3호증주민등록등본

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행정심판, 행정소송 >> 서식 >> 취소소송